

예 산 총 칙

2013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86,593,321	14,597,800
일반회계	404,465,831	12,133,975
특별회계	82,127,490	2,463,825
공기업특별회계	39,893,706	1,196,811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6,395,664	491,870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3,498,042	704,941
기타특별회계	42,233,784	1,267,014
주택사업특별회계	68,053	2,042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563,066	46,892
농수산진흥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5,529,925	165,898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708,720	21,262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1,092,856	332,786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064,233	31,927
수질개선특별회계	5,529,041	165,87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536,487	16,095
도시개발특별회계	300,504	9,015
기반시설특별회계	3,513	105
농어촌뉴타운특별회계	15,837,386	475,122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157,848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93억원으로 한다.

제 8 조 다음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 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재무활동경비
3.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4.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